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15.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04. 9 제정
2007. 12 1차 개정
2011. 6 2차 개정
2013. 12 3차 개정
2015. 6 4차 개정



목 차

- CEO 메시지
- 두산의 CP운영조직 및 업무분장
- 2015년 편람개정 주요사항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개요	1
1.2 이해관계자	1
1.3 CP(Compliance Program)란 ?	1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1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
3. CP 7대 구성요소	3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4

II. 공정거래법·하도급법

1. 기업집단관련 유의사항	
1.1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법 제9조)	6
1.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법 제10조의2)	7
1.3 기업집단공시	
1.3.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9
1.3.2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11조의4)	9
1.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사항	
1.4.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법 제11조의2)	11
1.4.2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11
1.4.3 공시내용	12
1.4.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12

1.4.5 위반시 제재	16
1.4.6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공정위 답변예시	17
2. 내부거래시 주의사항	
2.1.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금지(법 제23조의 2)	25
2.2. 일반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2.2.1 정의	29
2.2.2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분	29
2.2.3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의 위법성 판단기준	29
2.2.4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31
2.2.5 내부거래 심의절차 및 기준 마련	37
2.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2.3.1 행정적 제재	40
2.3.2 형사적 제재	41
2.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1
3.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시 주의사항	
3.1 하도급거래란?	
3.1.1 제조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43
3.1.2 용역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46
3.1.3 수리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8항) 및 건설 위탁(하도급법 동조 9항)	49
3.1.4 법적용 대상사업자	50
3.1.5 법적용대상 기간	50
3.1.6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50
3.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3.2.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52
3.2.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73
3.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97
3.3 위반시 제재	
3.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112
3.3.2 위반시 제재	112
3.4 업무시 유의사항	
3.4.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114
3.4.2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115
3.4.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115

3.4.4	가단가 유의점	115
3.4.5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115
3.5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3.5.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관련 사항	116
3.5.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116
3.5.3	부당한 수령거부	117
3.5.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117
3.5.5	부당감액	117
3.5.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118
3.5.7	관세 환급액지급	118
3.5.8	하도급대금지급	118
3.5.9	대물변제	119
3.6	Q&A	119
4.	거래시 우월적 지위 남용	
4.1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4.1.1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124
4.1.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124
4.2	유형	
4.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124
4.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125
4.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126
4.3	우월적 지위 남용시 제재	
5.3.1	행정적 제재	127
5.3.2	형사적 제재	127
5.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27
5.	경쟁사업자거래 (부당 공동행위)관련 유의사항	
5.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5.1.1	의의	128
5.1.2	담합의 규제 현황	128
5.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28
5.1.4	합의추정제도	130

5.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5.2.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31
5.2.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32
5.2.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34
5.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5.3.1 행정적 제재	136
5.3.2 형사적 제재	136
5.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36
5.4 경쟁사업자와의 입찰시 유의사항	
5.4.1 수주자(낙찰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138
5.4.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138
5.5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Dos)	139
5.6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140
5.7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140
5.8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142

Ⅲ. 소비자보호법

1. 대리점 계약체결(약관거래)시 유의사항	
1.1 개요	145
1.2 약관의 의의	145
1.3 약관의 규제	145
1.4 주요 내용	
1.4.1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146
1.4.2 불공정약관조항	147
1.4.3 책임배제조항	148
1.5 업무 시 유의사항	160
1.6 불공정 약관의 효과	161
1.7 벌칙	162
2. 프로모션(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1 의의	163

2.2	위법성 판단기준	163
2.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64
2.4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4.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165
2.4.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166
2.4.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167
2.4.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67
2.4.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67
2.4.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67
2.4.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168
2.4.8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	169
2.4.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69
2.4.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169
2.5	업무시 주의사항	
2.5.1	표시·광고의 정확한 이해필요	171
2.5.2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171
2.5.3	비교광고 유의사항	171
2.5.4	표시·광고시 유의사항(십계명)	172
2.6	위반시 제재	
2.6.1	시정조치	173
2.6.2	과징금	173
2.6.3	과태료	173
2.6.4	임시중지명령	173
2.6.5	벌금/징역	174

IV.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공정위 조사절차

1.1	조사 주체	176
1.2	조사 단서	176
1.3	배당과 사전심사	176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176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76

2. 공정위 심판절차

2.1 심판 주체	177
2.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178
2.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178
2.4 합의	178
2.5 의결서 작성	178

V.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분야 Check List	179
2. 하도급 분야 Check List	183

- CEO 메시지 -

친애하는 (주)두산 임직원 여러분!

(주)두산은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기업 고유의 철학이자 경영방식인 Doosan Way를 바탕으로 정직과 투명성, 공정경쟁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로 사전/사후 모니터링, 교육 등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는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실시, 사전업무 협의제도 활성화, 공정거래 Council 개최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준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주)두산의 자율준수 문화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들께 (주)두산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도급거래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행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협력사와의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에게 하도급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둘째,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는 일감을 준 회사 뿐 아니라 받는 회사 또한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계열사간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계열사에 비하여 가격·거래조건 등을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계열사와 신규 거래 발생시 긴급성, 효율성, 보안성 측면에서 반드시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자율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두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임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2015년에도 하도급거래, 담합 등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업무 가이드를 작성 및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준수협의회를 신설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운영하던 회의체를 담당 팀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자율준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율준수 활동이 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등 경영진의 실천의지 및 주관부서의 효율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실제 업무 담당자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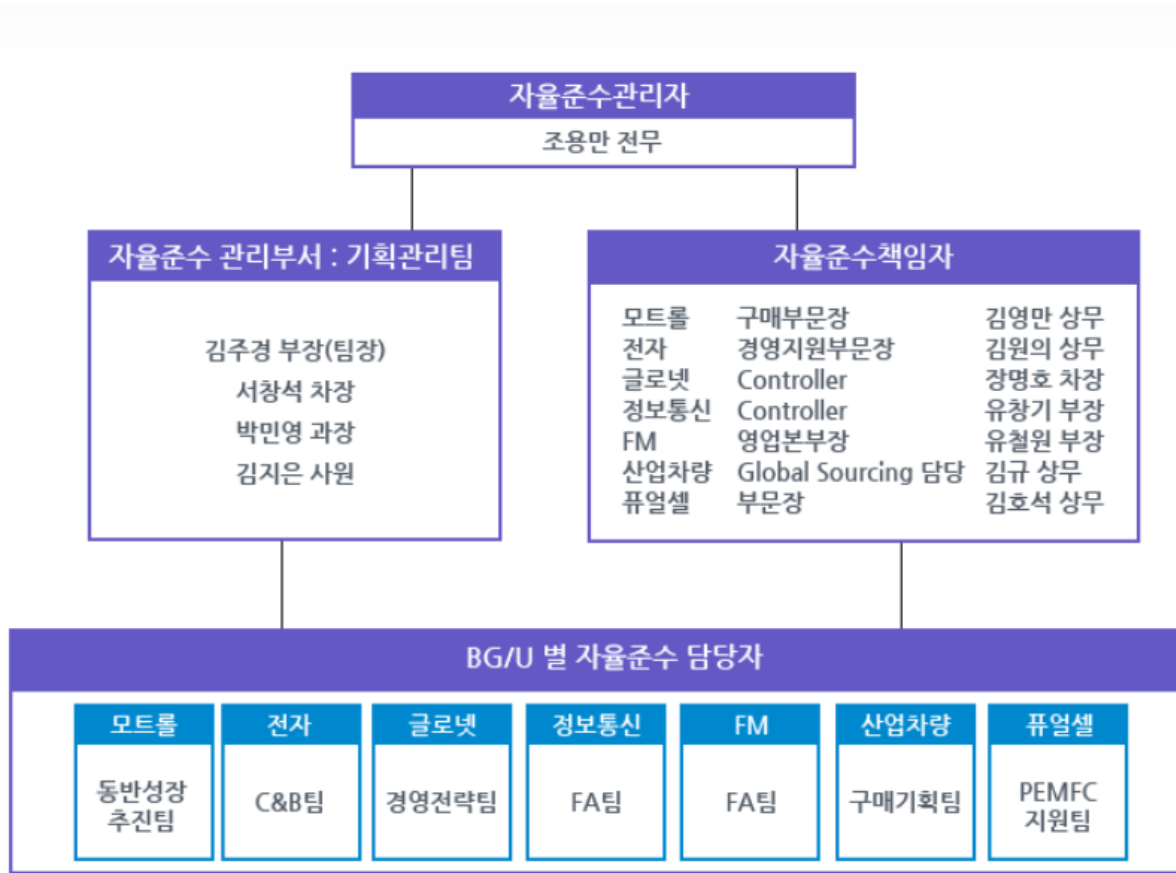
간혹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나 동반성장이 '귀찮은 일'이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Doosan Way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투명성을 지키면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5년 4월 10일

(주)두산 부회장

제임스 비모스키

<두산의 CP운영조직 및 업무분장>



■ 업무분장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관리부서	자율준수책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P 총괄운영 및 계획 수립 2. CP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3. 감사결과 및 경쟁법 위반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또는 시정요구 4. 임직원에 대한 CP교육 실시 5. CP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6. CP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7.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8. 하도급 분쟁조정회의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 보조 2. 회사전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P운영 및 실태점검 2. 각 BG(U)의 임직원 교육 진행 3. CP 사전/사후모니터링 협조
		사전모니터링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법 준수를 위한 관련부서의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해당하는 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해 점검 및 조사 2. 분기/반기/월별 각 사업부 체크리스트를 검토 및 확인

<편람 발행 이력>

개정 이력	개정 사유
2004.09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년 CP 도입 이후 첫 발간 •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이슈 수록
2007.12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필요한 관련 내용만 정리하여 수록 • 실무적용 체크리스트 및 업무 진행 시 구체적인 행동지침 추가 • 금지행위 리스트 수록
2011.06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 및 기업결합신고 대상 축소 - 하도급계약 시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및 계약서 기재 의무사항 추가 -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제도 실시 등 • 대표이사의 자율준수메세지 수록 • 공정거래자율준수 서약서, 두산그룹 기업윤리강령, 두산그룹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수록 • 심결사례 및 Q&A 반영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절차 수록
2013.12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 확대 - 하도급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범위 확대 2) 하도급 대금 감액 기준 및 절차 강화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강화 4) FAST TRACK 제도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야 할 일(Do)과 해서는 안 될 일들(Don't)의 구체적인 열거

<2015년 편람 4차 개정 주요 사항>

● 편람개정 방향

- (주)두산 임직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 관련된 최근 사례를 포함
- 공정거래법의 개요 및 기업의 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의 설명
- 공정거래법 위반 시 경쟁 당국에 의한 제재 내용 및 대처방법
-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 해야 할 일(Do)과 해서는 안 될 일들(Don't)의 구체적인 열거
-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준칙 포함
-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및 신설 규정 내용 반영

●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사항

- 과징금 고시 개정(2014. 5.30)으로 CP 인센티브 과징금 감경 개정 내용 반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환출자금지규정 도입 반영(2014.1.24 개정 및 2014.7.25 시행 반영)
- 계열사 및 특수 관계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내용 수정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2013.8.13 신설 및 2014.2.14 시행)
-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하도급법 실무, 하도급법 편람 내용, 체크리스트 수정
- 하도급법 주요 시행령 개정(2013.7.16) 사항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 보복행위 벌금 강화(2013.8.13 개정 및 2014.2.14 시행)
- 3 배 손해 배상제 확대에 따른 주요 사항 개정(2013.5.28 개정 및 2013.11.29 시행)
- 대물변제 시 절차 규정 개정 반영(2013.8.14 개정 및 2014.2.14 시행)
- 하도급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사항 반영(2014.1.1)
- 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2014. 2.12 제정)으로 인한 주요 편람 내용 및 체크 리스트 내용 추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2014. 7)으로 인한 주요 내용 반영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반영(2015.3 개정 사항까지 반영)



M a n u a l B o o k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개요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두산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두산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합니다.

1.2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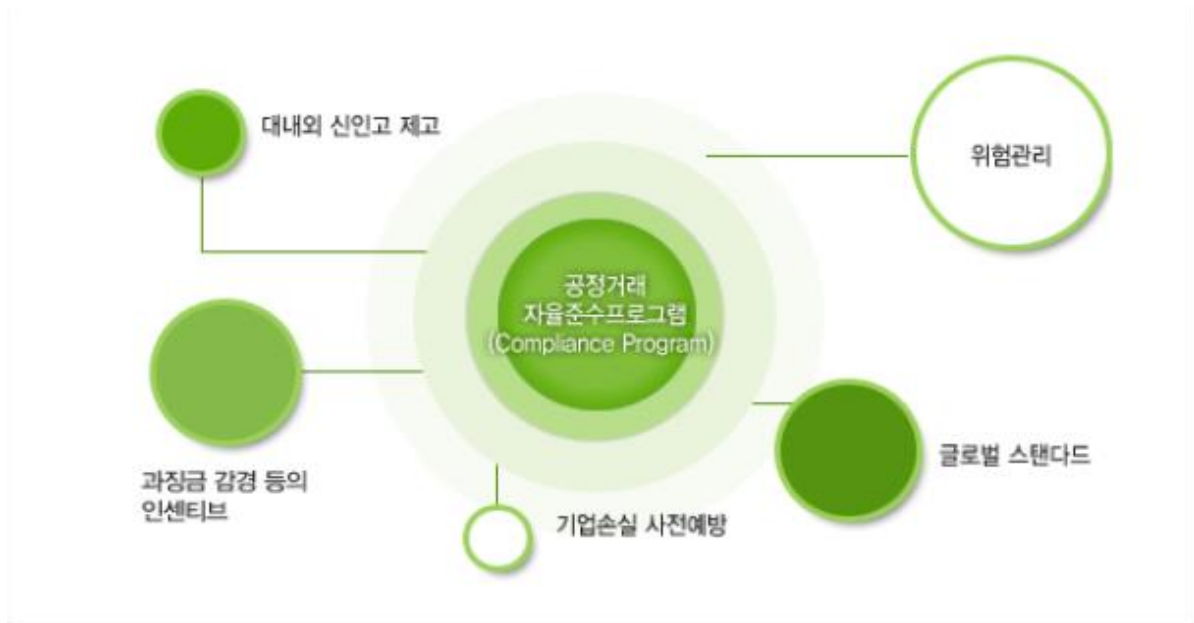
- 두산은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하며, 여기서는 두산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직원」이란 두산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1.3 CP(Compliance Program)란 ?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1.4.1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1.4.2 범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필수조건입니다.

1.4.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자율적 준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을 지칭합니다.
- 「공정거래관련 법령」이란 상기의 법률 외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총 13개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합니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3. CP 7대 구성요소

3.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합니다.

3.2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3.3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5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입니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합니다.

3.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7 문서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CP등급평가지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4.1 경감제도는란?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2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CP 운영고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과징금부과고시 기준 개정에 따라 CP등급에 따른 당연 감경은 폐지되고 자율준수노력의 사유로 최대 10%내에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P의 실질적 운영수준에 따라 CP등급을 8등급으로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

브가 적용됩니다.

- 직권조사 면제
 - A : 1년
 - AA : 1년 6개월
 - AAA : 2년
- 공표명령 감경
 - A : 공표크기 및 매수 1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단축
- 유효기간 : 2년



M a n u a l B o o k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II. 공정거래법·하도급법

1. 기업집단관련 유의사항

- 두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 지정일(매년 4월 1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 까지) 현재 동일기업집단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독점규제법 시행령 제17조 1항)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 현황 >

민간집단(49개)		공기업집단 등* (12개)
총수있는 집단(41개)	총수없는 집단(8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 신세계, 씨제이, 엘에스, 금호아시아나, 대림, 부영,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미래에셋, 동국제강,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대성, 하이트진로, 중흥건설, 한솔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에쓰오일, 케이티엔지, 한국지엠, 홈플러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항만공사

1.1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법 제9조)

- 의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두산 및 두산 계열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지의 예외(상호출자가 허용되는 경우)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 주의

- 예외적으로 상호출자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주식을 취득·소유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 상호출자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는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는 독점규제법 7조 2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관계의 해소는 명의의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 권한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적용 시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열회사간 직접 상호출자는 금지됩니다. 다만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간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법 제16조 내지 18조, 제66조)
 -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0%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소속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9.10.20,2009집단2470)
- 피심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인 A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미 피심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A와 상호출자가 발생하였고, 합병으로 인해 형성된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유예된 기간(6개월) 까지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였음.
 - 또한, A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 주식 처분 의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하여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1.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법 제10조의2)

- 의의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두산 및 두산 계열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 금융기간(여신)이 매개되지 않는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한 회사가 금융 및 보험회사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계열회사 중 금융보험회사로부터 보증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 국내계열사간 보증만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은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또는 예외(시행령 제17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에 대한 예외 인정
 - 국제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에 관한 보증,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보증에 대한 예외 인정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시 채무보증 해소시한 유예: 그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유예
- 위반시 제재(법 제16조, 제17조, 제66조)
 - 당해 범위반 채무보증액의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채무보증의 취소 등 시정명령에 처해집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4.11.13,2014집단0171)

◦ 피심인이 소속된 대한전선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1.부터 2013. 3. 31까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피심인은 (주)티이씨앤알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한 2008. 6. 10.부터 2012. 4. 17.까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된다.

◦ 피심인은 (주)티이씨앤알이 4개 상호저축은행(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6. 10.부터 2008. 6. 29.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140억원, 2008. 6. 30.부터 2011. 6. 30.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80억원, 2011. 7. 1.부터 2012. 4. 17.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66억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

1.3 기업집단공시

기업집단관련 공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법 제11조의2),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11조의4)가 있습니다.

1.3.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유가증권·자산 및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해야 합니다.
- 상법규정에 의한 이사회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위반시에는 유형에 따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인 경우 1억원 이하,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3.2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11조의4)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두산 및 두산의 계열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해야 합니다.
- 분기별 공시(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원칙(DART 이용)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기업의 작성부담등을 고려하여 일부항목은 연1회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소유지분현황은 연1회 공시
 -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은 분기별 공시, 다만,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및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 계열회사간 채권·채무 잔액현황은 연 1회 공시
- 분기별 공시 사항은 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2·5·8·11월 말일)에 , 연1회 공시 사항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위반시에는 유형에 따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인 경우 1억원 이하,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 내용>

- 주요 공시항목은 ①기업집단 일반현황 ②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범주로 크게 구분되고 이는 21개 항목으로 세분류됩니다.
- 일반현황은 재무·손익현황 등 6개,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2개, 주식소유현황 2개,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거래 등 11개 항목 등 총21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분

기 또는 연1회 공시됩니다.

◦ 항목별 공시 내용 및 공시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항목(4)	공시내용(23)	빈도
일반현황(6)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①-1 영위업종 현황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2)	⑥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1회
주식소유현황(2)	⑧⑨ 소유지분현황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단, ⑩은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⑪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⑫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분기 (단, ⑮·⑲는 연1회, ⑯ 양식 중 비상장 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은 연 1회)

1.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사항

1.4.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법 제11조의2)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회사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합니다. 두산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 두산의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 두산의 해외현지법인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서 제외
-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두산이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두산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1.4.2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 두산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혹은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분기별로 50억원(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2012.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 유가증권거래란 (1)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산거래란 (1)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됩니다.
 - 상품·용역거래란 회사의 상품거래, 용역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참고>

■ 자산거래란?

- 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현금으로의 교환이 빠른 자산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①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미

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

②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비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①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②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료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토지사용권리, 지상권 혹은 임차권, 지역권 등

③ 투자자산 : 기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인 자산

⇒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임대 건물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상표권 등) 등의 자산이 재무상태표 상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관련 임대료, 사용료 등을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계상할 경우 본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양식에 기재

1.4.3 공시내용

- 거래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입니다.

1.4.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은 (1) MAX[자본금, 자본총계] X 5% 이상이거나 (2) 5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합니다(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재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입니다.

① 거래금액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시에는(1)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봅니다.
 - 상품·용역거래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 (=보증금X이자율) 관리비는 제외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현재는 3.4%로 고시되어 있음(기획재정부령 제269호)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

-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중간에 변동된 경우에는 (1) 최초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변동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하지 않으며, (2) 계약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계약변경일 또는 계약연장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계약체결 당시 4.0%이었으나, 이후 법령개정으로 3.4%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의 적용시점은 (1) 최초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변동한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그대로 4.0%), (2) 계약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계약변경일 또는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3.4%로 변동).
- 월임대료 10억원, 보증금 30억원, 계약기간 1년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공시를 위한 연간임대료와 환산연간임대료(보증금X이자율)의 산정(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4.0% 적용)은 10억원X12개월+30억원X3.4%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비는 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관리비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로 판단합니다.

② 거래상대방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참고>

◦ 특수관계인이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2) 동일인 관련자(① 배우자, 6촌 이

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계열회사,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 위한 거래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계열사 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 B와 자금의 차입·대여거래, 상품·용역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③ 이사회 의결절차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상법 제382조 제3항 :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商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④ 공시 시기

- 상장법인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합니다.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변경시 그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합니다.
 - 거래목적의 변경, 거래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변경시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할 경우 등
 -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합니다.

⑤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의결결과는 상장법인은 1일(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공시
변경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실제거래금액을 공시합니다 ◦ 당초보다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전에 이사회 의결 의결 후 공시
분기중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합니다
계약체결 방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이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건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⑥ 상품용역 거래 공시 주의사항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거래 중 상품용역거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공시 회사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거래 회사들의 영위업종이 상이할 경우, 일방은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나 타방은 자금·자산 등의 거래인 경우가 다반사, 따라서 상품·용역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에서는 A사가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콘도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콘도·골프장 영위회사는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고 A사는 자산(유가증권) 거래에 해당하지만 A사도 상품·용역거래로 공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품·용역거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당해 거래를 회계적으로 매출액(영업수익) 거래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기존에는 거래당사자 중 한쪽회사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여,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보아 공시

: A사가 업무용 사무실을 B사(건설업)에게 건설하도록 할 경우 A회사는 건설완공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 완공 후에는 자산(건물)으로 회계처리 하므로 자산거래에 해당하고, B사는 A사로부터 받는 건설대금을 매출로 처리하므로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며,
 : 지주회사 A사는 자회사·손자회사들과 그룹 이미지·상표권 사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 대금을 받는 경우, 지주회사는 무체재산권인 상표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계처리상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므로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자회사·손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무체재산권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자산거래에 해당합니다.

⑦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공시규정 제4조⑤ 제1호)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1.4.5 위반시 제재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금액]

이사회 의결여부	위반사항			기본금액(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 공시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내 공시했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일마다 10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내에 공시한 경우		5,000
		기한을	누락하지	5,000

위반사항				기본금액(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넘긴 경우	않은 경우	7,000
			누락한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가중조정 사유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 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 기본금액에 각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
20억원 이상	50

1.4.6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공정위 답변예시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관련

구분	내용	
1	Q	거래의 당사자 중 한 회사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는지?
	A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회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의 거래행위가 기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거래 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면 됩니다.

2	Q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A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3	Q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A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4	Q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5	Q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에서 자본총계와 자본금의 기준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A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6	Q	부동산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A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비상장은 7일 이내)에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7	Q	부동산 매매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A	당초 의결·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래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당초 계약분 토지의 인접토지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이므로 추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	Q	영업권 양수도 계약시에는 어느 양식에 공시를 합니까?
	A	'특수관계에인에게영업양도'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양식에 공시하면 됨

9	Q	부동산매매 계약시 의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A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차 금액이 상향조정 되어 대규모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A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11	Q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공시 여부?
	A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 거래금액 산정 관련

구분	내용	
1	Q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A	거래금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식거래의 경우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봅니다.
2	Q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 합산인지 아니면 입금액인지의 여부?
	A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의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고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3	Q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과의 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는?
	A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의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의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용역거래 관련

구분		내용
1	Q	계열회사 A와 ERP등 시스템 구축용역 제공 및 H/W, S/W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A	계열 전산SI회사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은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2	Q	계열 건설업체와 건물 등의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여부?
	A	계열 건설회사에게 공장, 사무실 등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행위는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3	Q	계열회사인 광고대행사에게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전담시키고 있는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계열 광고대행사에게 제품 및 기업 브랜드 등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의뢰하는 행위는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4	Q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20%, B사 발행주식의 20%, C사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 C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A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 의 경우 A사,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② 의 경우 B사,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③ 의 경우 A사,C사는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5	Q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20%를, C사 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B,C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p>공시의무 회사는?</p> <p>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A	<p>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p> <p>①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p> <p>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p> <p>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p>
6	Q	<p>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1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C사는 비상장법인임)</p> <p>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p>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p>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A	<p>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p> <p>① 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p> <p>② 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p> <p>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p>
7	Q	<p>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19%를, C사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 C사는 비상장법인 임)</p> <p>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p>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p>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p>

	A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 ②, ③의 모든 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8	Q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되는가?
	A	동일인 및 동일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릅니다.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9	Q	두산이 두산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아래와 같은 상품용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는?(단, 아래 계약 이외의 상품용역거래는 없음) 계약 ① : 계약기간('13.1.1~'13.12.31), 거래(매출)금액(200억원) 계약 ② : 계약기간('13.3.1~'14.2.31), 거래(매입)금액(150억원) <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내역 (단위 : 억원)>
	A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3년 1/4분기 및 14년 1/4분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13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3년 2/4분기부터 4/4분기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Q	2013년 9.30. 2013년 4/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5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중 거래금액이 7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A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공시한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당해 분기 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1	Q	2013.9.30. 2013년 4/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50억)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결산 결과 거래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A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만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2	Q	2013. 9.30. 2013년 4/4분기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이 40억원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 12. 1. 새로운 상품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3년 4/4분기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A	당해 분기 중 거래금액이 50억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합니다. 단, 새로운 상품용역계약 체결이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13	Q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A	상품용역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Q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
	A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며,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은 자산거래에 해당됩니다.
15	Q	상품용역거래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분기중에 발생할 금액에 대해 50억원이넘어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도 괜찮은지요? 또는 정확한 거래금액 산정을 위해 사전공시를 하지 않고 분기말 시점에 해당분기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한지?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들은 총수 또는 그 친족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50억원(자본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 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분기전 예상되는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 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용역의 거래가 분기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즉, 분기전 의결·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 중 이사회 의결·공시가 가능함). 분기말 확정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미 공시한 사안에 대해 분기말에 확정된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감으로 변경된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제8조의 주요내용 변경 및 제9조의 2 제2항에 의거 공시를 해야 합니다(분기말 확정공시는 공정위가 운용중인 또 다른 공시제도인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와 관련된 내용임).
16	Q	상품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는 2012.4.1부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데 2012.3.31. 이전에 향후 1년간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경우 별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계약 건별 계약체결방식 공시가 2012.4.1.부터 시행이고,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분기별 사전공시가 원칙이므로 이미 향후 1년간의 거래기간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더라도 2012년 3/4분기 거래부터는 계약 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2012년 2/4분기 중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경우, 2012년 2/4분기 거래에

		<p>대해 사전공시를 하였으나 2분기 중 주요내용 변경 공시(거래금액 20%이상 증가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4분기 및 2/4분기 거래에 대해 분기전 사전공시를 하였으나 거래금액 20%이상 감소로 인해 주요내용 변경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거래금액 감소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을 감안).</p>
17	Q	<p>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기재할 때 계약서상 계약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p>
	A	<p>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 등 거래내역을 기재하라는 취지로, 계약명은 본래 계약의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되, 계약명 자체가 영업상 비밀인 경우 등에는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p> <p>* 예) xxx 신제품 광고 계약 → 제품 광고 계약</p>

2. 내부거래시 주의사항

2.1.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금지(법 제23조의 2)

2.1.1 정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비상장 20%)이상**인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합니다.
 - 법 제23조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참고

- 두산 및 계열사의 특수 관계인 지분 현황도 (2014년말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율 20% 이상 : (주)두산, 네오플렉스, 네오험딩스, 빅엔트◦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 : 두산베어스, 두산타워, 오리콤, DIP 홀딩스, 두산생물자원 |
|--|

- 법 제23조의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성
 -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부당한 이익발생
 - ③ 부당한 이익의 특수관계인에의 귀속
 - 상당성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50억원 이상
 - ②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매출액의12%&200억원 이상

2.1.2 유형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할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합니다.
 -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안전지대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기회제공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IT, 물류, 광고, 건설부대서비스, 빌딩관리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며,
 -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합니다.
- 적용제외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물량몰아주기)

-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대주주가 지분을 갖는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입니다.

※ 안전지대

거래상대방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 안전지대외에도 거래목적달성(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유의 사항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합니다.

□ 유의 사항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열사에 물량물아주시기 사전 검토 사항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 정상가격이란 두산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 ※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합니다.
-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장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는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일반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2.2.1 정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2.2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분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규제대상	사업자 일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몰아주기) ②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2.2.3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의 위법성 판단기준

① 지원행위성

(a)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 에게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 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주의>

- * 특수관계 없는자 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추정되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지원의도가 엇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 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b) 지원행위는 지원주체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

-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
-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집단 전체 이익을 위해 계속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계열 유지·확장하여 부당지원행위는 경제력집중을 통하여 결국 지원주체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함 (대법원2004.10.14.선고2001두2881)

② 상당성

-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③ 부당성

(a) 부당지원의도

- (b)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등 참고)

(c)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주의>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부당지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검토자료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2.2.4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① 자금 지원

❑ Must Not do These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등을 포함됩니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두 2881판결 등).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두32 81판결).

❑ 유의 사항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됨(대법원2004.10.14.선고2001두2881 대우 1차사건)
-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임(대법원 2004.4.9.선고2001두6197현대 1차 사건)

② 자산 지원

❑ Must Not do These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 수령,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 하도록한 경우 등

❑ 유의 사항

-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③ 상품 및 용역 지원

❑ Must Not do These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해 준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유의 사항

-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 고려

<공정위 관련 심결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15.3.23, 2014시감3087)

- 피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용역을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등에 의한 낙찰률 보다 매우 높은 낙

착률을 적용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IT 관련 단순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한전KDN 주식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중간 유통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전KDN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전KDN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을 전우실업 주식회사와 수익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할 때보다 매우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우실업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부과

SK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2.12.9.3, 2012시감0470)

-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 계약 방식으로 5년 또는 10년의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함

- 7개사들은 인건비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고시 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 SK텔레콤은 유지 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함

- 장기 계약 형태로 대규모 물량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SK C&C가 적용 인건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규모 할인 등 별도의 할인을 받지 않은 점

- SK C&C가 기업집단 SK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일인이 SK C&C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에 비추어 부당지원의 유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SI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7위에서 3위로 상승한 점 : SI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획득 유지

- 동일인의 기업집단 SK 에 대한 소유권, 경영권이 강화되고, SK C&C의 주가가치가 상승한 점

-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7대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주)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12.3.21, 2011서감2312)

○ 피심인들은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계열회사인 웅진홀딩스에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 웅진홀딩스가 MR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심인 5개사로부터 전입 받은 인력은 웅진홀딩스의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웅진홀딩스의 인력들이므로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는 웅진홀딩스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5개사가 부담함으로써 해당 비용만큼 경제상 이익을 제공

○ 웅진홀딩스에게 지급한 대행료는 2010년 한 해에만 1,400백만 원 내외로 웅진홀딩스의 같은 해 당기순이익 11,900백만 원의 11.7%에 달하고, MRO관련 매출총이익 10,349백만 원의 13.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웅진홀딩스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수입원이 됨.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 웅진폴리실리콘이 속해 있는 시장은 경기불황과 생산설비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상태로 관련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심인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은 자본금(194,100백만 원)의 31.5%에 해당하는 61,200백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었고, 또한 2008~2010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전망도 급속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보다 최저 14.68%에서 최고 22.10% 낮은 수준으로 차입을 하여 총 287백만 원의 금리차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대자동차외 3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07조사0845)

○ 기업집단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전문 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동일인 정몽구가 40%(10억원), 그의 장남 정의선이 60%(15억원)를 출자하여 2001. 2. 글로비스(주)설립

○ 이후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제철(주)는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비스(주)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함

○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363,727백만원(범위반으로 보는 지원성 물량은 4,814억원, 지원기간은 2004. 6월까지) 상당을 글로비스(주)와 거래

○ 글로비스(주)에게 몰아준 운송물량은 지원주체의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화물운송주선업 시장 1위 사업자와 비교한 크기,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글로비스

(주)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

- 또한, 각 물류업무에서의 거래내용, 전체 매출총이익률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비스(주)와 거래함으로써 글로비스(주)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현대자동차 및 부당지원계열사 총 63,157백만원 부과)

④ 통행세(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기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 유의 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두산의 거래비용 절감, 두산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두산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공정위 관련 심결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15.3.23, 2014시감3087)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IT 관련 단순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한전KDN 주식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중간 유통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전KDN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전KDN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부과

SK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2.12.9.3, 2012시감0470)

-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 계약 방식으로 5년 또는 10년의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함
- 7개사들은 인건비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고시 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 SK텔레콤은 유지 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함
- 장기 계약 형태로 대규모 물량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SK C&C가 적용 인건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규모 할인 등 별도의 할인을 받지 않은 점
- SK C&C가 기업집단 SK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일인이 SK C&C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에 비추어 부당지원의 유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SI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7위에서 3위로 상승한 점 : SI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획득 유지
- 동일인의 기업집단 SK 에 대한 소유권, 경영권이 강화되고, SK C&C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점
-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7대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4.3.3, 2013제감1910)

- 피심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열회사인 내츨삼양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주식회사 ○○○에 라면·스낵류를 판매하면서 피심인이 주식회사 ○○○에 라면·스낵류를 직접 판매할 때보다 싼 가격으로 내츨삼양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

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내추럴삼양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내추럴삼양 주식회사에게 유통업자 브랜드(PB)제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
- 삼양식품(주)는 라면 등을 이마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내추럴삼양(주)(건조 야채 및 분말류 제조 판매사업자)을 중간 유통 단계로 하여 판매하면서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추럴삼양(주)는 이마트에게 6.2~7.5%의 판매장려금을 재지급함.
- 삼양식품(주)는 PB제품을 내추럴삼양(주)을 통해 이마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추럴삼양(주)에게 상품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식으로 지급
- 내추럴삼양(주)의 지분 90.1%를 동일인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음
- 삼양식품(주)의 간접 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과 배치되는 점
 - 통상 라면 제조업체들이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함
 - PB 제품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내추럴삼양(주)이 유통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하기는 어려움(거래 규모도 내추럴삼양(주) 전체 매출액의 60%로 상당한점)
- 양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내추럴 삼양(주)이 이마트와 PB제품에 관한 단가 계약 체결에 따른 손실은 내추럴 삼양(주)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삼양식품(주)이 장려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부당지원에 해당
-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51백만원) 부과

롯데피에스넷(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2.9.13, 2012서감1294)

-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
-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2.2.5 내부거래 심의절차 및 기준 마련

① 수의계약 관련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수의계약은 거래상대방 선정을 위한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간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경쟁입찰 거래가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열사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 이 때, 수의계약 체결 사실은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특히, 지원의도)의 유력한 정황사실로 이해될 수 있고, 공정위의 위법 요건 입증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 비계열사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배타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정황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열사에 통합 발주시,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가 적정성 점검

- 실질적 업무는 중소기업 등 독립기업에 일괄 재위탁하고,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하여 과다한 이익을 수취하는지 독립된 부서 내지 기관에서 적정성을 감시하여야 합니다(통행세 거래금지)

③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료보존 및 거래절차 유의점

(a)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및 구성 : 자율 설치하되 판단의 독립성 확보 가능한 위원 구성
 - 3명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2/3 이상으로 하여 독립성 확보
- 권한 : 안건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청, 시정건의
- 의무 : 심의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의사록 작성

(b) 자료보존

- 자료보존 :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한 자료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년간 보존
- 보존대상
 - ① 계약 담당자, 최종 승인권자 및 상대방 담당자, ② 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③ 거래상대방 선정기준과 방법·결과, ④ 세부거래조건 및 산정근거, ⑤ 날인된 계약서 최종본

(c) 거래절차 유의점

- 독립된 내부거래 심의기구 또는 내부거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만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계열사간 협상 절차, 수의계약 발주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 필요
- 공정위가 주목하는 경쟁입찰 촉진 분야(건설, SI, 광고, 물류)와 관련하여 계열사와 장기간 전속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면 현 거래절차 및 내용에 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특히 거래 상대방 계열사의 동일인 일가 지분이 높은 경우

- 내부거래 관련 자료보존의 중요성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기타 내부지침으로 내부거래 관련 자료보존 범위와 기간, 방법 등을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개정법에서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공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쉽게 제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15.3.23, 2014시감3087)

- 피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용역을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등에 의한 낙찰률 보다 매우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 피심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을 전우실업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할 때보다 매우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우실업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08.11.23,2008하개2277)

- 아파트 공사는 그 성격상 특별한 기술력이나 사업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비계열 건설사에게 발주하기 곤란하지도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에스티엑스건설 외에 1개사(일신건설산업)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에스티엑스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내부 품의서를 작성
- 또한 사원아파트 공사와 유사한 시기에 인근에서 착공된 양산물금 현진에버빌의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자료를 입수하여 공사금액을 비교하였는바, 에스티엑스건설이 제출한 견적서상 사원아파트 공사의 3.3㎡당 공사비가 321만원으로 양산물금 현진에버빌의 3.3㎡당 공사비 262만 원보다 약 23% 높음.
- 사원아파트 공사의 3.3㎡당 공사비를 3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는 양산물금 현진에버빌의 그것보다 약 14% 높고, 피심인이 양산물금 현진에버빌 공사시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밝힌 본사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하더라도 약 6% 높은 수준임.

피심인 스스로도 사원아파트 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이거나 폭넓은 조사를 바탕으로 공사금액을 검토하였다면, 보다 낮은 가격에 발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

기타

- STX 조선해양이 STX 건설에 사원아파트 공사를 발주하면서 다른 건설사의 공사원가와 비교분석 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의도를 인정할 정황이라고 판단(의결 제 2012-028호)
- 기아자동차가 계열사인 로템에 고가로 프레스와 자동차 운반설비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다른 거래처를 배제하였다는 점을 지원의도 등 부당성의 근거 중 하나로 판단(의결 제2007-504호)
- 한국가스공사가 경쟁입찰 가능한 공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수의로 발주한 행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실을 부당성의 근거로 삼음(의결 제2008-290호)

2.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2.3.1 행정적 제재

① 시정조치(법 24조)

-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과징금 부과(법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2)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지원금액*부과기준율

◦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	관련 조문	산정기준
일반부당지원행위	23조 1항 7호	○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행위	23조의 2	○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3.2 형사적 제재

◦ 부당지원행위(23조1항 7호)를 하였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경우(23조의2의 1항, 4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66조)

2.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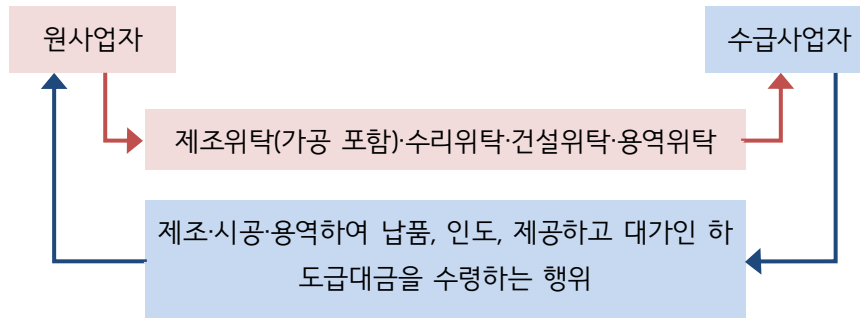
◦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56조)

3.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시 주의사항

<주의>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1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두산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건설기계 제조, 각종 부품 제조위탁) 와 용역(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한 용역 위탁), 수리(기계 수리), 건설 위탁 등이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

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3.1.1 제조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①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입니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합니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합니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합니다.

<주의>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②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합니다.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하도급법 제2조제1항] “하도급거래(제조위탁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고시

- [1.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됩니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요건은

- 첫째,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 둘째,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 셋째,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제조"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상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쟁점이 됩니다.
 - 상기 조항은 "당해 제조위탁에 기해서 물품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위탁과 제조간의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당해 위탁물이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물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 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 어떤 특수한 거래환경하에서 그 제조여부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기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으로 인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 임가공위탁과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뿐만 아니라 "위탁과 제조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이제까지의 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볼 때, "단순 임가공 위탁" 및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규격화 또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사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는 바,
 - 심결과정의 각종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경우 위탁물이 단지 대체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 거래조건, 납품비율, 생산물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탁"과 "제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 또는 의존관계에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체물과 비대체물의 구별기준>

	대체물	비대체물
물건의 개성	문제삼지 않음	중시
물건의 지정	"종류, 품질, 수량"式	"바로 이 물건"式
거래상대방	제조사 미확정	제조사 확정됨이 일반적
규격 또는 품질의 지정	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	원사업자
대체가능성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가능(○)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불가능(x)
"제조"의 "위탁"에 대한 의존성	제조행위가 위탁이전 또는 위탁과는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제조행위가 반드시 위탁을 받은 후 위탁에 기해서 이루어짐(○)

<제조위탁거래와 관련된 계약유형의 비교>

계약의 종류	도급계약	제조물공급계약		매매계약
		비대체물	대체물	
재료 조달의무	주문자	제조사	제조사	제조사(판매자)
소유권 이전	주문자가 처음부터 보유	제조사⇒주문자	제조사⇒주문자	제조사(판매자) ⇒주문자
일의 완성의무 (제조 의무)	본질적 요소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불능)	본질적 요소(x)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가능)	불발생
민법학의 태도	도급	도급 (제조>판매)	매매 (제조<판매)	매매
주문자의 제조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 적 지위	계약구조 자체 만으로 우월 적 지위 존재	계약구조 자체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위탁과 제조 간의 연관 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 우월적 지위 존재	

3.1.2 용역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a)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

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b)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②역무의 공급 위탁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참고>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하도급 거래의 특징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산업의 현황

◦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 구축, 이하 SI) 산업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 . 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협의의 SI 산업)

◦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 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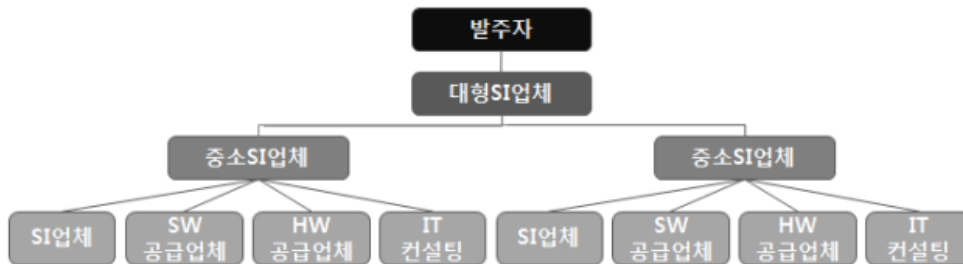
◦ SI산업은 계열사의 지원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계열사의 발주 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됨.

◦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자신의 위

탁반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 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사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국내 SI 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



-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사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e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됨.
-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급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하도급 거래의 특성

- SI 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1, 2차 수급 사업자의 개념이 없음. 즉, SW 관련 대부분의 과업이 유형물인 원재료의 투입 없이 무형의 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통용되는 원재료 납품부터 부품, 반제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정구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부품(2차협력사), 반제품(1차협력사), 완제품(원사업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2차 협력사의 정의가 어렵고, 동일한 업체가 개별 사업별로 1차, 2차 및 2차 이하의 협력사가 될 수 있는 등 고정적 구조가 아닌 유동적 구조임.
- 또한 건설위탁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하도급 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3.1.3 수리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8항) 및 건설 위탁(하도급법 동조 9항)

① 수리위탁

(a) 개념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b) 종류

- 유형 1: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2: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건설위탁

(a) 개념

- 건설위탁이란(법 제2조) :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

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 무등록 •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b)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하며(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광주,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만 적용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이 제조위탁입니다(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3.1.4 법적용 대상사업자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두산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두산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두산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합니다.

3.1.5.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합니다(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의미하며,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3.1.6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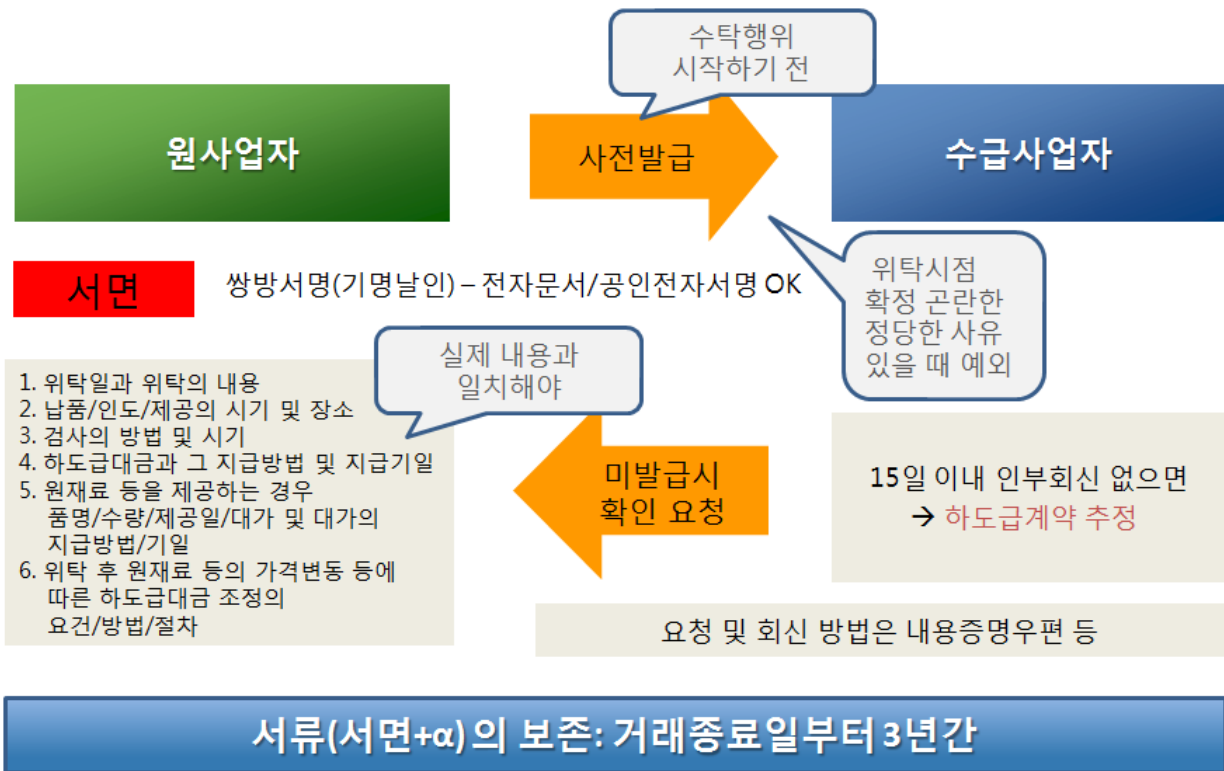
<판례(대법원, 2001다 27470, 2003.5.16)>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계약체결단계	이행단계	대금 지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특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 지급 의무 ◦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원재료 가격변동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3.2.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 개요

-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면미교부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3303판결)**
-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종된 하도급계약도 포함합니다(ex. 사출분야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물 금형 제작)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에는 발주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탁시 기재사항>

-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또한 형식상 쌍방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 가능).

-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합니다.

※ 용역위탁시 서면기재 내용

-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 제3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지 정보성과 물의 품목, 종류,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입니다. 제3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할 위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를 넘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3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락시키는 것(부분적으로 양도·

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 제3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술자의 기술수준별로 작업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단,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제3조 서면이 다른 경우에는 이 두 서면의 상호관련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 한 후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산정근거가 되는 수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제3조의 서면 형식으로 재 발행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재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A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2) +) B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3) +) 수급사업자가 작성에 총당한 실비(교통비, □□비,▲▲비)

◦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초 서면의 교부

①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용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 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 당초 서면에 기재 할 「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년○월○일」, 「발주후 ○일」로 기재

②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 기재사항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서면의 교부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

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여는 상호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의 ○○문서의 보충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당초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며, 서식·내용은 불문합니다.

- 「가단가」에 의한 발주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나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단가를 기재한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의 예견가능성(서면이 없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중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법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서면 사전 교부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Must Not do These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며
-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수급사업자의 통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한국세큐리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10.2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유리 생산 업체 한국세큐리트(주)는 2007년 4월 수급 사업자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 부품과 관련한 조립 및 서열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신규 차종 기아 포르테를 추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빠뜨린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로,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유리 생산 업체 한국세큐리트(주)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부사3107)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진성이엔지는 납품처 위치 변경으로 증기한 물류비의 일정 금액을 매월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0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들은 적자가 발생하는 자신의 생산라인을 수급 사업자에게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급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위탁을 중단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발주했다.

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9.5)

◦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주)은 2011년 수급 사업자인 (주)모스펙에게 위탁한 두산중공업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15억 9,500만 원에서 15억 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했다. 다른 크레인 제작(포스하이메탈)건에서 하도급 대금 4억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이

유를 들었으나, 이는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 ~ 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주)모스팩에는 전부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했다.

또한 (주)모스팩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의 할인료 2,769만 원과 수수료 2,687만 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에서는 (주)모스팩이 크레인 제작 작업을 2011년 6월 14일부터 시작하였음에도 13일 지난 2011년 6월 28일 신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급했다.

2011년 1월 20일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2011년 6월 28일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 위탁에서는 서면 기재사항 중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산성우하이텍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부사4421)

◦ 현대 ·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 (주)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하여 감축된 수량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주)아산성우하이텍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주)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날 날로부터 3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2항에 위반된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총 28장의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 주의 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서면”은 ‘언제’ 발급(교부)해야 하는가(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 교부대상 서면**

(a) 발급 대상 서면: 7개 유형

(b) 하도급거래 개시(2개 유형) 및 이행단계(5개 유형)

- 서면의 종류, 각 서면 별 필수 기재 사항, 서면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양식(4개)* 등
- * 계약 확인서면(요청서면, 회신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서면 등
-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예외
-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거래개시 (제3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과정 (제8-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14개 유형 · 보존대상 서면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 방식 등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서면 보존 대상

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법 제9조
5	감액 서면	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제4조)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ii) 부당하게 정하는 것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 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도를 넘는 저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영을 압박하게

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행하기 위하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같은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래 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합니다. 통상대가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합니다.

부당한 방법 이용

+

통상 지급대가보다 낮은 수준

[예시]

- ①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할 때 단가 또는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건의 대금결정시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자체가격책정모델을 적용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사용하는 경우

[예시]

-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대금 결정
- ③ 원자재 가격이 상당수준 인상되어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한 경우

-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 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 ㉠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㉞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 가격

-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낮은 수준의 예>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봅니다.

◦ 부당하게의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부당하게 단가인하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징벌적(3배) 손해배상 >

- 하도급법상 징벌적(3배) 손해 배상제는 기술탈취 유형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3월 도입되었고, 현재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합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위 3개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납품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현행 하도급법 규정(기술탈취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외국 사례(미국)를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금액은 '3배 이내'로 규정함.
 - 또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되도록 함.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

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 ㉓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 ㉔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㉕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 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㉖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㉓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㉔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㉕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㉖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취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려치기)
-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㉗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㉘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㉙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㉚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 의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

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㉓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㉔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고려사항>
- 원사업자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행하였는지 여부
 -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 결국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그 부담을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함)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위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이란 가령 원사업자가 A, B, C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경쟁력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A제품에 부속되는 목적물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의 경우는 이들과 직접 연관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위반 예시>

- ㉞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㉟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㊱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 ㉞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㉟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 ㉓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㉕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제하1077)

- 현대모비스는 부품공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 현대모비스(주)는 '08년 6월부터 '09년 10월 기간 동안 총 13건의 심의(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 현대모비스(주)는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인하하고,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경우 당해 입찰 건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인하
- 현대모비스(주)는 '10년 1월에서 '11년 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주)가 '08년 6월부터 '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

두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8하개4195)

- 두산중공업은 영광 1, 2호발전기 배관 등 발전기 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 입찰업체인 별지 기재 8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공정위는 과징금 19백만원을 부과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위법성 요건의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

- [부당한 방법]으로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목표할당] 예시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 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일방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불리하게] 예시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여부의 판단은 구체적 교섭과정이나 수급사업자 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단가결정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간 시장상황, 가격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교섭을 거쳤는지, 가격결정 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용인정도, 가격인하분에 대한 두산이차간 부담 정도 등을 고려
- 정상적 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은 아닙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부사1930, 2014부사0457)

-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 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 이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 원도 부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11.1)

- 대우조선해양(주)가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 제조 위탁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 대우조선해양(주)는 '08년부터 '09년 기간 중 89개 수급 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 시 시수(Man Hour)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결정 .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였음.
- 조선업종에서 임가공 위탁 시 하도급 대금은 보통 시수(작업 투입 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됨.
- 대우조선해양(주)의 경우 시수에 실제 작업 투입 시간 보다 적은 목표 작업 투입 시간(목표시수)을 적용하였는데,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에 추가하여 다시 생산성 향상율('08년 : 6%, '09년 : 7%)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였음. 또한 절차적으로도 대우조선해양(주)는 생산성 향상율이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 적용하였음. 즉,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율을 정하여 생산부서로 하달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산정한 것임.
-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 제조 위탁 과

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단가 인하액(436억 원) 지급 명령과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9.5)

-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주)은 2011년 수급 사업자인 (주)모스팩에게 위탁한 두산중공업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15억 9,500만 원에서 15억 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했다. 다른 크레인 제작(포스하이메탈)건에서 하도급 대금 4억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부당 감액에 해당

아산성우하이텍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부사4421)

-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 (주)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하여 감축된 수량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

성동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11.27)

- 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경인기업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S1038호선 등 237건의 선박 블록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874개 블록 중 E11C블럭 등 1,046개의 블록에 대하여 최초 계약시 적용하였던 시수(Man-Hour)를 다음 계약부터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103,184M/H의 계약시수 삭감을 통해 총 23억2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
- 선박 블록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
- 제작비 단가는 순수 인건비로서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 또는 동결해야 하는 것임에도 단순히 외부 경기악화 및 경영상황의 어려움에 따른 고통분담을 사유로 인하
- 공정위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선박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총 35억8,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3억 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③ 부당특약금지(제3조의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업무상 유의사항

- 일정한 유형의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3.2.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①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탁 임의 취소, 변경이 금지 됩니다.

(a) 위탁 임의 취소/변경 금지

(b) 수령/인수 거부 또는 거부 금지. 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의 위탁을 한 후 임의로 용역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하게 발주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공종이 지연되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사정(판매부진, 공간부족, 경영상황악화 등)을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Dos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발주 system 점검
 - 구두 발주, 사전 발주 등 발주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구두 발주나 사전 발주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
-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발생 여부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 행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는지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Dos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 구매강제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거래 내역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내용 이외에 물품이나 장비 기타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시 거래사유 및 거래대금은 적정한지
- 거래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③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 검사의 방법
 - : 검사의 방법으로는 두산이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습니다.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예시): 다음의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나,
 -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한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공정위 관련 심결례>

(주)케이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5.8, 2013건하1015)

◦ (주)케이티는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상품명: 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주)케이티는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주)엔스퍼트에게 사양이 낮은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하여 조기에 출시하고자 했음.

◦ (주)케이티는 K-PAD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추어 17만 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주)케이티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주)엔스퍼트가 공박한 상황에 이르자 (주)케이티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하면서 17만 대 위탁 계약은 무효화됐다.

◦ (주)케이티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

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 됨.

-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로 (주)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제품 하자는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 OS(Operatong system) 문제로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됐다.
- (주)케이티는 검수 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고, 그럼에도 (주)엔스퍼트는 Pre-IOT, IOT 등의 검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결국 납기 전에 Pre-IOT까지 통과했다.
- (주)케이티와 (주)엔스퍼트 간 17만 대 무효화에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되었고, 실제로 무효화 계약일(2011년 3월 8일)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
- (주)엔스퍼트 입장에서는 17만 대 납기가 실제로 연장되고 무효화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주)케이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주)인스프리트에게도 (주)케이티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 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 이에 공정위는 (주)케이티에게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0억 8,000만 원을 부과

②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부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는 반품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수급사업자의 명확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안정화·수급사업자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여기서의 상당기간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하자가 명확히 확정되고 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수급사업자가 반품하지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길 때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통상의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 경우는 당해 물품 수령 후 6개월을 초과한 반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검사를 생략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위임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9.1, 2009하개1116)

-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심인은 2007년 9월경에 신승준(신진산업 대표)으로부터 납품받은 '휴대용 이동전화단말기 케이스용 사출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1.1. 부터 2005.5.30.까지 G사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

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부당 반품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반품에 대한 관련 임, 직원의 인식
 - 구매부서나 생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기 수령한 제품 등을 반품하고 있지는 않는지
 - 사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claim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나 절차 등 존재 여부
 - 반품의 귀책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교부하고 있는지

③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봅니다.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봅니다.
 -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봅니다.
-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즉,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의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한 경우 감액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중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해당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있는지를 따져 법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㉞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지나친 감액”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위반예시>

- ㉞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 ㉞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과오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즉 수급사업자의 과오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㉞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공제한 해당 물품·장비 등의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의 동일·유사한 물품·장비 등의 시장 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㉞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 ㉞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1회차 대금지급시 아직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납품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에 의한 단가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품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㉓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시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예시>

- ㉔ 원사업자가 전년도에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㉕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 ㉖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Dos

-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
- 하도급계약서상의 작업내역과 실제 작업한 내역에 차이가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금,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한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Must Not do These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련 심결례>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부사1930, 2014부사0457)

-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 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 이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 원도 부과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1.8.8)

-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단가인하 합의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움,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지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9.5)

-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주)은 2011년 수급 사업자인 (주)모스펙에게 위탁한 두산중공업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15억 9,500만 원에서 15억 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했다. 다른 크레인 제작(포스하이메탈)건에서 하도급 대금 4억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부당 감액에 해당

아산성우하이텍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부사4421)

◦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 (주)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하여 감축된 수량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4.3. 제품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자신의 귀책사유)로 P사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 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410,699천원 중 66,699천원을 부당공제하였음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주)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12,874천 원을 감액하고 2,144,986천 원만 지급하였음

④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

□ Dos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영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범위반 아닙니다.

□ 부당 경영간섭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의 인사 교류 기타 존재 여부
 - 하도급 업체에게 재무 관리, 기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주요 임직원을 파견 또는 전보 등으로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 하도급 업체 관리
 - 상생 목적이 아닌 단가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수지 현황 요구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 관련 심결례>

<p>알에프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1.20, 2008하개 26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에프텍은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 납품수량 대비 5%를 무상으로 추가 납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 ◦ 1차 수급사업자인 정우산업(대표 우병호)에게 휴대폰 부품인 파이프 아세이(Pipe Ass'y)를 제조 위탁함에 있어, 정우산업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정우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2005하기2442)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설계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품에 대해서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된 승인원을 요구하였음.
- 재하도급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재하도급사업자가 작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피심인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간섭

⑤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19조).
 -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20조).

❑ Must Not do These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보복 조치 여부
 -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 등을 이유로 거래 단절, 거래 물량 감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지

- 탈법 행위 여부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납품 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지는 않는지

<공정위 관련 심결례>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 이전부터 2006.9.15. 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유)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천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유)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4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11.20,2011하개1887)

- 수급사업자인 (주)△△△이 관계기관에 범위반을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중단한 행위

⑥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유용금지(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1)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예시2)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예시2)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시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세부행위 및 위법성 판단기준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대상행위

·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 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 차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원사업자가 신제품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시2) 원사업자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예시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7)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계약 시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8)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9)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1)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허가나 신고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2) 다른 부속품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외형 도면 및 수치만 필요함에도 원사업자가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3) 원사업자가 부품 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부품 승인에 불필요한 상세 기술자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의 의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7조의 3)).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설계생산제품에 대해 **제조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납품되는 부품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거나, 안정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복수거래처 개발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정위 관련 심결례>

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14.9.11, 2013제하3664)

- 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엘지하우시스는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 S사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 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술자료임.
-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항에도 위반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대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납품단가 인하 같은 불공정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기술 탈취 심사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 자료의 개념,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 기술자료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합니다.

그 동안 억울함을 겪고도 제대로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자료 부당 요구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대기업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와 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이제 그만 ~ !!



3.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① 선급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율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 선급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급금 발생 유무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②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기간(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됩니다.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times 0.075 \times 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⑤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times 0.20 \times 지연일수/365일

⑥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지급액}}{\text{하도급대금지급액}} \times 100$$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10년 8월부터는 현금 외에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오던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등은 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비율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어음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교부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 대금 지급의 적정성
 - 대금 지급기일은 준수하고 있는지
 -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는 적법하게 지급하는지

<공정위 심결례>

한화에스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11.5, 2013서제2966)

한화에스엔씨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 김○○)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 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스 추가개발 용역' 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주간업무보고서(2013. 2. 13. 및 2013. 3. 6. 보고자료)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한화에스엔씨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함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전산상의 재고품(통상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이를 '전산재고'라 부르며, 이하에서도 이를 '전산재고'라 한다.)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케드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0.8.25)

- 광명트랜스포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트랜스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92,053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1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경원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스티로폼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446,225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6,934천원을 어음을 교부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8.18, 2013건하1472)

- (주)포스텍은 *** 원(주) 등 1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인한 차액 96,116천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인 105,725천원을 미지급
- (주)오**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15일이 경과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
- 이** 등 5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용역 완료일로부터 60일(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솔루션즈(주) 등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용역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⑧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 제16조)

- 요건: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제조, 수리 또는 용역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는데,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합니다.
 -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됩니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예시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 을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 이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 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합 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 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적용 받았다면 물가 조정에 따른 대금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에 따른 대금 조정률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변동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 건이 발주자가 존재하는 거래인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
- 계약 금액 변경 등의 적법성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 내용대로 조정하였는지
 - 계약 금액 변경 시 법정기일 내에 변경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지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기일내에 지급하였는지

㉔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 됩니다.
- 요건
 - 조합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정협의권).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를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범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2)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③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 심결례>

(주)삼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서건2019, 2013.7.9)

- (주)삼호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 공사,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음.
- (주)삼호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 그 내

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470~504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였음.

- 공정위는 ㈜삼호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림) 소속 계열회사인 대기업으로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지급 명령하고 기타 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 한전케이피에스(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계약 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 기한(30일)을 94일에서 537일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였음.

◦ 주식회사 ○○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동화력 기계설비 경상정비하도급공사' 등 14건을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 한전케이피에스(주)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 조정한 하도급 대금은 2억 27,196,000원이며, 지연 조정에 따른 지연 이자 30,120,500원까지 지급하여 자진하여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음.

⑨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2014.2.14부터 시행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
 -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함)
- 원사업자는 위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

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 주소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대법원 판결[대법원2003.5.16.선고2001다27440선고판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劣位)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 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 계약서 기재 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 대물 변제 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

-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이외의 거래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계약 내용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전에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⑪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 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됨
 -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하면 됨

□ 담당자 유의사항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 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00.5.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가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 수급사업자가 증명).
- 직접지급시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이 가능합니다(직접지급 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 발주자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행령 §4).
-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3.3 위반시 제재

3.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단서

신고

2. 사건의 인지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3. 사건처리

조사중지

법위반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무혐의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심의절차종결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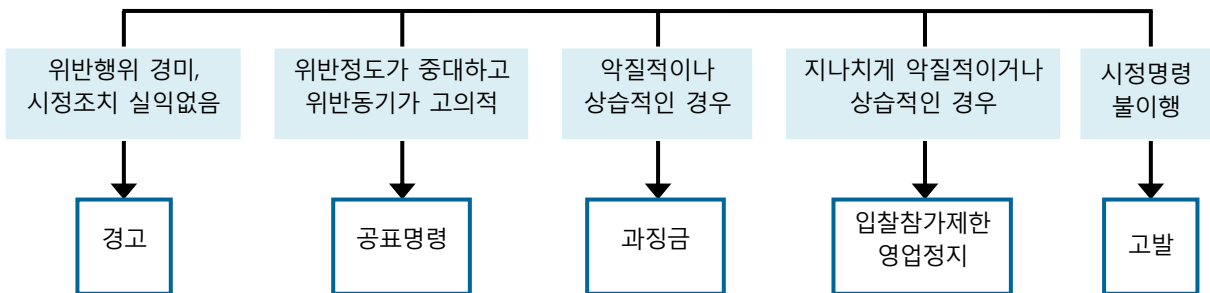
종결처리

법위반

시정명령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3.3.2 위반시 제재

①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30조)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책임(법 제35조)

-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 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 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과징금부과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 부과대상
 - 상습법위반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경우로 구분한후, 다시 유형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합니다.

<중대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미발급,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 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 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제외
위반금액	3억원 초과	
위반행위 수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과징금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요건
조사거부·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가중사유	요건
방해·기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피한 경우(40%)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 ·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
보복조치·탈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0%)
법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50%)

⑤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⑥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법제25조의4)

- 공표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 공표방법: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3.4 업무시 유의사항

3.4.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4.2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협력회사의 사용 양식(제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견적서에 기재하지 말고, 다만,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4.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시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위탁에 있어 수리해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 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3.4.4 가단가 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3.4.5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 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5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3.5.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관련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해놓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가미정, 납기미정)등의 발주(주문)서 발행금지
-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업체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문 3년간 보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취소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업체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주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업체의 생산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업체 선정 검토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발주 및 납기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3.5.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 확인사항
 - 단가 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 하였는가?
 - 단가 결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 원도금액에 비하여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수의계약시 '저가 하도급기준' 보다 낮은 단가적용은 없었는가?
- 단가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3.5.3 부당한 수령거부

- 확인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수령)하였는가?

3.5.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생산공정상 불량품 처리방법
 - 위탁물의 검사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상 발견된 불량품의 처리는 생산부서에서 불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

3.5.5 부당감액

- 확인사항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3.5.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3.5.7 관세 환급액지급

◦ 확인사항

-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3.5.8 하도급대금지급

◦ 확인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3.5.9 대물변제

◦ 확인사항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대금 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3.6 Q&A

구분		내용
1	Q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A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체결할 경우 Escalation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3	Q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5	Q	하도급 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6	Q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을언제로 봐야 하는가?
	A	하도급법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 시점으로 보나, 예외적으로납품이 빈번하여 양두산이자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수령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7	Q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를 일정자격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Q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는?
	A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위탁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A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도, 인장강도 등을 양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1	Q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 감액에 해당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Q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A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13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4	Q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시까지의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	Q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가능한가?
	A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6	Q	가단가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17	Q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지정가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Q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A	약속한 納期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품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19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급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범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A	<p>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p> <p>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21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수령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2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A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23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A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4. 거래시 우월적 지위 남용

우월적 지위에 있는 두산은 협력업체와 거래시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4.1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 “우월적지위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4.1.1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겐 현저히 불이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두산은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4.1.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점에 주의 하십시오.

4.2. 유형

4.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 개요

- 협력업체에 대해 두산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협력업체에게 두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산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금지이유

- 협력업체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두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강관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4.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 개요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써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금지이유

-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는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 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두산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두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 개요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금지이유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합니다.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3 우월적 지위 남용시 제재

5.3.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 한도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5.3.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그리고 양벌규정(70조)에 따라 법인 및 관여한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5. 경쟁사업자거래 (부당 공동행위)관련 유의사항

5.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5.1.1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합니다

5.1.2 담합의 규제 현황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1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합니다.
 -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됩니다.

②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역지라는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甲 은행 등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5.1.4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㉓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㉔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㉕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㉖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습니다.

5.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5.2.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됩니다.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합성수지건에서 대표규격 가격 → 나머지 규격은 대표규격에 연동)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석도강판건에서 운송비 공동결정)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2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체(국제카르텔)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4.13)

◦ 2001년 5월, 제이텍트와 세플러코리아는 서로의 물량을 뺏기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병행 납품에 따른 첫 번째 가격 설정에 구체적으로 합의함.

※ 제이텍트는 엔화, 세플러코리아는 원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바, 양 사는 환율과 운반비용, 관세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원화 기준 담합 가격을 산출함.

◦ 이러한 가격 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양 사는 매년 가격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계획을 상호 교환하여 경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해 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독일·일본계 국제적 베어링 업체 2개 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5억여 원을 부과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3.3,2014국카1544)

-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 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 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려워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음
-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1.30,2014카조1980)

- 피심인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음.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음.
-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은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

5.2.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 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1.27,2014국카3037)

-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약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
-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2개 산업용 화학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5.1.29)

- (시장점유율 합의 관련)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양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음.
-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방해 관련) 양사는 자신들의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주)세홍화약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

으로 공동 대응하였고, 결국 세흥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4.4.17, 2013카총2140)

-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발주되는 입찰 건을 대상으로 입찰 건별로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하여 발주 물량에 따라 낙찰 순번을 조정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별로 생산량을 할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각 사업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
- 피심인들은 국내 MICR 스캐너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농협중앙회 발주 MICR 스캐너 입찰에서 제품공급가격을 유지하고자 투찰가격을 협의하고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상당 부분 제한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4.8.27, 2014카조1956)

- 피심인들은 2001년과 2003년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거나 입찰 하한 수량 등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심인들과 사건 외 사업자들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분물량과 투찰 단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
- 피심인들이 사건 외 사업자와 함께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각 사의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 피심인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한 점, 당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

5.2.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

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구매 입찰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4.1.8,2013카조1797)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100mm~1,800mm 구경의 수중펌프 입찰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결정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의 원칙을 결정한 다음 조달청의 수중펌프 발주 물량을 파악하여 합의대상이 되는 입찰 건을 선정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입찰 건마다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특정 구경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 배분제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 합의참여자들은 각 입찰기일 전에 미리 만나 모의 투찰을 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실제 투찰가격을 결정한 뒤 낙찰금액과 제조원가와의 차액을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합의참여 업체들에게 배분하는 것과 같이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
- 피심인들은 합의참여자들의 낙찰순번을 정하여 특정 입찰 건에 한해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합의참여자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순번제 및 이익금배분제 방식에 따라 특정 합의 참여자가 단독 낙찰 받은 입찰물량의 이익금을 합의 참여자 상호 간에 배분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특정 업체의 단독입찰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주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들의 행위는 합의참여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를 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3.4.29,2012전사1064)

- 피심인들은 아스콘 납품시 제품별 기준단가 또는 업체별 납품단가를 설정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공사 현장별로 납품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
- 피심인들이 아스콘 기준단가를 협의하여 정하거나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사업자들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게 예상되고, 이로 인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또한 피심인들이 관련 공사현장에 납품할 물량을 특정 업체에게 배정하기로 한 합의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아스콘 제조업자들 뿐만 아니라 아스콘 수요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

5.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5.3.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5.3.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 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하지만 기업이 담합에 안주하며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게을리 하면,
품질과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경쟁하는 데 힘겹겠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담합하는 순간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기업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이지?



담합하지.

게다가 소비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업이 가격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제품을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담합은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니까.

흠... 하지만 담합은 장으로
부러지기 힘든 유혹이야.



미국이나 EU에서는 담합, 즉 카르텔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한다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내리곤 하지.
하지만 담합 처벌에 대해
반기업정서를 부추린다고 하지는 않아.



그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
나는 우리나라가 유난스럽게
담합에 엄격한 줄 알았어.



1999년에는 유럽연합(EU)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담합 제재를 받은 비타민 제조업체가 무려 1조 4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결국 사업에서 손을 땀어.
지난 1월에도 가스절연 개폐장치 담합에
9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기업은 미국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3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고,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어.



3억 달러라면
3,0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선진국이 우리보다 강력하게
담합행위를 처벌하는군.



그렇지. 만약 자네 회사도
미국이나 EU에서 적발이 됐다면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고,
직원이 구속될 수도
있었지.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미국이나 EU가 더
심한 것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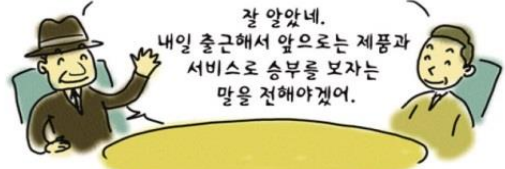
흠...

담합은 시장경제의 최대의 적이야.
선진국들이 담합을 규제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야.
우리도 담합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범죄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잘 알았네.
내일 출근해서 앞으로는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보자는
말을 전해야겠어.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칙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소비자인 관객이 최고의 만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규칙을 지키며 경쟁을 해야

소비자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담합, 카르텔, 기업연합,
부당공동행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5.4 경쟁사업자와의 입찰시 유의사항

5.4.1 수주자(낙찰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 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입찰가격을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 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4.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경영방침 등
 -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5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Dos)

- ①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 것
 -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 ②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 준수 관리자에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할 것
- ③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할 것

- ④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 이의를 제기하고, (ii)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
 -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을 것
- ⑤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5.6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됩니다.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②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 ③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 ④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

5.7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할 것

[표현 예시]

- 동업사 "협력" 강화
 - "업계공동대응(예정)", "업계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는 200x10.1부터 추진예정", "B사 5% 결정 예정"
 - "경쟁자제", "경쟁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안정화"협조, "시장 정화"방안, "시장질서"유지, 개선 필요
 -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 "두산과 지역", "타사 지역"
 - "경쟁사의 조건은 두산 조건과 동일(xxxx 시행 예정)", "L사 28%(두산 조정시 인하 예정)", "월 x회 정기적인 교류활동"
 - "상위사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하기로" 합의
- ③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 ④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 ⑤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 ⑥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할 것
 - ⑦ 기타
 - 미래에 대비하여 작성할 것
 - 문제가 될만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지배력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것
- 내부 또는 외부 문서 작성시 항상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정위 담당자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가능한 가장 최악의 내용으로 해석될 것을 가정해야 함
- 두산의 가격이 두산의 사업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할 것

5.8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추정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①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 ②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③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범위반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⑤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

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⑥ 모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 시 모임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⑧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⑨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는 매월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시 참석한 업계모임에 대한 활동내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

모임명	
모임의 목적	
예상활동내용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간사	
참여회사 (협회 등 포함)	
회합주기	
활동내용보고 여부 및 방법	
담당부서(팀)	
담당자(연락처)	
특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업계모임을 참여코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

2015 . . .

소속부서장

(서명)



M a n u a l B o o k



소비자보호법

Ⅲ. 소비자보호법

1. 대리점 계약체결(약관거래)시 유의사항

1.1 개요

- 보통 거래약관은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그들과의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을 의미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1.2. 약관의 의의

-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약관은 계약의 표준화·정형화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 그러나 약관은 고객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면책조항,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이와 같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약관법 위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심의의결대상이 됩니다.

1.3. 약관의 규제

- 약관법상 약관의 규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편입 통제는 첫 번째 단계로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 명시, 교부의 의무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 편입통제가 인정되면 해석통제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당해 계약에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모두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내용통제 즉, 불공정성통제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약관 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가를 심사하여 효력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약관법제6조~제14조가 적용됩니다.

1.4. 주요 내용

- 우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 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 부인하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약관규제의 중점이 약관의 명시에서 불공정조항의 무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의 편입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제안만으로 족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 즉, 약관은 일단 사업자의 제안만 있으면 개별약관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항변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1.4.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 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내용상으로는 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두산이자 사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 되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대법원 1994. 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②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이나, 대리인과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③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법 제3조 제3항)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합니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당해 계약은 무효입니다.
-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2 불공정약관조항

① 일반원칙(법 제6조)

- 약관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란 사업자가 약관의 작성·통용시 장래의 다수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이익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업자와 고객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희생되도록 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아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당해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로서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킵니다(대판 1994.12.9, 93다43873).

❑ Must Not do These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

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②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책임, 불법행위책임도 포함합니다.
-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급부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1.4.3 책임배제조항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본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책임

을 배제하는 조항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사업자가 위험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에 반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손해배상·계약해제·하자보수·완전물 급부 등이 있는데 본 호는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할 이러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또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법정요건보다 가중시키는 약관조항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하자담보책임의 특수한 사례를 위해 좀 더 자세히 규정한다. 견본매매, 품질 및 성능보증부매매 등에 있어서는 원래의 견본 등과 같은 물건이 급부 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생깁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 우리 약관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나 견본과 다른 급부 제공, 실제와 다른 부실업계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악성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의 인정은 엄격히 행해져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민법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 이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이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채무의 불이행시 고객의

배상액을 지불토록 약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과중한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당사자들은 거래상 생길지도 모르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둘 수 있는 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라고 합니다.
- 약관법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에 있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상대방의 공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한 승리행위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는 점입니다.
- 당사자가 약속한 배상액이 부당히 과도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량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그 불편이라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본 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약관조항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마치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손해액이 예상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임에도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를 감안하여 제9조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같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543조 이하 및 제627조 등). 그러함에도 사업자가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약관으로 고객이 갖는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다면 고객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 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비용상환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 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마)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Must Not do These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지/해제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 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지/해제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 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관련 판례>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판례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③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입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급부의 결정권한은 이행된 물건이나 용역이 과연 약속한 채무(또는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부가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물건이나 용역을 억지로 수령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그러한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와 수량적 차이, 성질상의 차이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이행시기, 이행장소의 차이도 이에 해당한다. 또 일시에 전급부를 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씩 급부하여도 무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에 해당합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채권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급부)를 하게 하는 권리이며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권의 주요한 것이고 그 작용이란 측면에서는 청구권입니다. 채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을 채권의 목적이라 하며 이러한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가 급부인 것입니다.
- 급부의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급부의 내용이 사실상 사업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불리한 급부의 내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일반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고 고객이 그러한 사실을 예견할 수 없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채권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 공급을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④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고객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계약 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항변권(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상계권 등 그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변권이라 함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상계권이란 쌍방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두산이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권리입니다. 기타의 권리에는 항변권 상계권 이외에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 또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유치권(민법 제320조), 선택권(민법 제380조 이하) 이나 제공된 급부가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일 때의 수령거절권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입

니다. 이상에서 고객이 가지는 각종 권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따라서 개별적 약정이라면 모르되 약관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도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간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고객에게 부여된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고객 측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원래 타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에는 다시 개인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현저하게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약관으로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약관이 고객 측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호는 이러한 사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신용거래에서는 대부분의 약관에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도 고객은 이의가 없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허용요건은 채무불이행.최고.고객의 동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누출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래상태를 보면 이러한 조항이 남용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반드시 법적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법적 보호이익, 반사적 이익, 관습법상 부여되는 권리, 기타 모든 사회적 이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

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 거래약정서상의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현저히 지급능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써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최고했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본 건 약관에는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단순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며 위반사유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공정위 시정권고 제 2002-368호】

⑤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즉 법률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가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도달을 의제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의 도달의 의제 등에 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원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

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실태를 보면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를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약관에 의해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약관의 변경은 양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의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약관의 변경시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법은 고객이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원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사실상 의사표시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계약조항(예컨대 의사표시를 반드시 공증할 것을 요구하는 예)은 무효입니다.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의사표시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등을 금하는 조항: 사업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불확정기간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이 사업자의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등 고객의 계약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意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업무계약서 등의 의사표시의 부당한 도달 및 급부의 일방적 변경조항 제4조 판매계약 조건 변경 등의 통지
 - ※ 본 계약과 관련된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규정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변경내용은 메모를 사업국에 발송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함
 - ※ 변경 메모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시적인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판매대리인에게 판매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지도자는 이 변경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봄

-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 규정은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동 사안의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계약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법률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 규정 등의 의사표시는 메모의 통지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공정위 시정권고 제 2002-094호】

<관련 판례>

- 약관법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판례 :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35379 판결]

⑥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대리인이란 본인에 갈음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수동대리)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리제도에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대리제도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대리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 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만을 매개할 뿐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약관 중에는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의 책임

을 진다는 조항을 두는 예가 있는바 법률은 그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한편 대리권 없이 행한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그 무권대리인의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 등이 정한 책임범위보다 가중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을 책임진다는 조항

⑦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민·형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소제기의 조항이 무효로 되는 이유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고객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란 법정관할 외에 1개 또는 수 개의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고객의 편의를 희생하여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부제소합의, 관할의 합의, 입증책임의 전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 부제소의 합의란 장차 민·형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두산이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며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오로지 자연채무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두산이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이러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약관을 통해 하는 경우에만 확장하면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권리구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합니다.
 - 부제소 특약조항은 무효이다(대판 1994. 12.9, 93다43873).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다(대판 1998. 6.29, 98마863).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공정위 심결례>

(주)태원의 상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12.6.8,2012약관1347)

- 보증금에는 급부목적의 보증금, 권리금 성격의 보증금, 변제담보 수단의 보증금 등이 있으며, 이 건 거래보증금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폐수처리비, 공공사용 시설유지비등)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또는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등 중도매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변제담보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변제담보 수단으로 예치하게 되는 보증금은 그 성격상 일정한 채무의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며,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급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건 약관의 거래보증금은 피심인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자 발생이 예상되고,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미수금 정리 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2항에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입찰한 낙찰자가 납부한 차액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이를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4.28., 선고97다51223 판결)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자는 원칙적으로 납입자인 중도매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구글코리아(유)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11.9.30, 2011약관2897)

-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관리, 자신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외부에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다.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제3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기술·보안 수준을 능가하는 해커의 등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은 당해 유출에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도록 최대한의 기술적·관리적 보안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심인은 매우 극단적으로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고 있

다.

- 일단 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외에도 자신들이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을 다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유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한 배제사유가 그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사유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 피심인이 계약 갱신시 계약서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 계약해지·해제를 한다고 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인 약관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관 문언상으로는 사업자인 “갑”이 자신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갑”이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이 있을 때 계약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계약해지·해제 사유로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어떤 자산관리이고 해당 자산관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해제한다는 것이냐 계약체결시 약관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은 불측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심인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해제되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위 약관 어디에도 사전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다.
- 따라서 임대계약서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1.5. 업무 시 유의사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시 “부당하게 과중한”의 판단기준
 -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경위, 배상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

액의 크기, 거래관행, 경제상태 종합 고려합니다

- 약관 변경은 계약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약관 변경 시 고객은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약관의 존속,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6 불공정 약관의 효과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시정조치
 -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사용금지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 시 당해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약관의 심사청구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가능합니다.

1.7 벌칙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이 부과되며,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프로모션(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1 의의

- 표시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합니다.
- 광고
 -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률과 관계
 - 공정거래법
 - ※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임.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됨
 - 부정경쟁방지법
 - ※ 부정경쟁방지법(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임
 - 소비자보호법
 - ※ 소비자보호법(제10조, 제11조의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각 입법 목적을 달리 하므로 경합하여 적용(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아님)

2.2 위법성 판단기준

- 소비자의 오인성(誤認性)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 이 사건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판결례 : 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5636판결]

-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말하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판결]

- 거래질서 저해성

-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합니다.

2.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허위/과장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 비방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 심결례>

남양유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0.6.22, 2008소정4034)

- 남양유업(주)는 2008. 10. 3. ~ 10. 14. 기간 동안 중앙 일간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허위·과장, 기만 및 비방광고를 하였음.
-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남양의 생산 설비 및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
- 첨단시설과 시스템으로 인해 유해원료를 100%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

합니다.”)

-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됨.
-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
-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이므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됨
- 경쟁회사의 유아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의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
- 식약청 검사에서 피심인은 물론 경쟁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이라고 표현하여 경쟁회사의 제품은 멜라민 함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됨.

<대법원 판례>

- 상품용기인 유리병에 한글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면서 한글 천연 다음에 바로 한자 천연을 써넣었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었을 것을 다른 줄에 적은 한문자로 천연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 영문자로 'MINERAL WATER' 와 'CIDER'를 각각 분리 표시한 것도 그 제품을 광천수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신문광고에서 “천연사이다시대 개막선언”이란 표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사이다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염려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고의 위 일련의 상품선전 내지 광고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려움[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6860판결]

2.4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4.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예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아시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4.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타사가격과의 비교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시>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타사가격 1,200원 → 두산가격 900원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2.4.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2.4.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4.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예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4.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 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 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 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4.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 허위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 "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제품
-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실과 같다고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을 발췌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2.4.8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시>

-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품질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에도 “아직도 ○○사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광고하는 경우

2.4.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함.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 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예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TV, 세탁기” 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박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공정위 심결례>

(주)웨스코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2015.3.4,2014안정3999)

-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정전보상용량을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최초에 표시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과 달리 표시하였는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순간정전보상장치(VSP)에 표시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실제와 다르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실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과 동일할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표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

(주)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4.11.17, 2013구사3356)

-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행할 당시 설계도상에는 전실 부분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전실을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수분양자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하였음.
- 소비자들은 통상 각 세대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광고만으로도 전실을 단순히 복도의 일부분으로써 개별세대가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공용공간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특히,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전실이 표시되어 있고, 견본 주택에 전실이 설치되어 그 내부에 수납장 등의 가구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더욱이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이러한 전실이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되어 있다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

2.5 업무시 주의사항

2.5.1 표시·광고의 정확한 이해필요

- 사업장 등의 게시물 및 간판도 표시에 해당합니다.
 - ※ 예 : 상품 사용설명서, 사업장 간판
- 대규모 광고메일발송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 표시·광고의 방식(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PC출력자료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광고에 해당합니다.

2.5.2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진실성)
- 소비자오인성이 있을 것(소비자오인성 ; misleading)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공정거래저해성)
 -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의사요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 예)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 :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최고의 행복을 드리는 아파트”

2.5.3 비교광고 유의사항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

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5.4 표시·광고시 유의사항(십계명)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 할 것
- 부당 표시광고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
- 부당한 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직접 부당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행하게 한 자이므로 영업사원,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본사에서 직접 광고(직영점 포함)하거나 대리점 광고에 본사 임직원이 직간접적 관여한 경우 본사의 책임
 - 별도의 독립 대리점이 임의로 표시광고시 대리점 책임임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 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할 것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할 것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사소한 민원이라도 규제기관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할 것
-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할 것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할 것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2.6 위반시 제재

2.6.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게 ①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②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④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6.2 과징금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 법 위반 관련매출액의 2%를 곱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이내).

2.6.3 과태료

- 다음 행위자에게 1억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① 중요사항으로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 ② 요청 받은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④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상기와 관련한 법인 또는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6.4 임시중지명령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일시 중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①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②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복절차: 임시중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6.5 벌금/징역

- 다음의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
 - ②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행하게 한 자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M a n u a l B o o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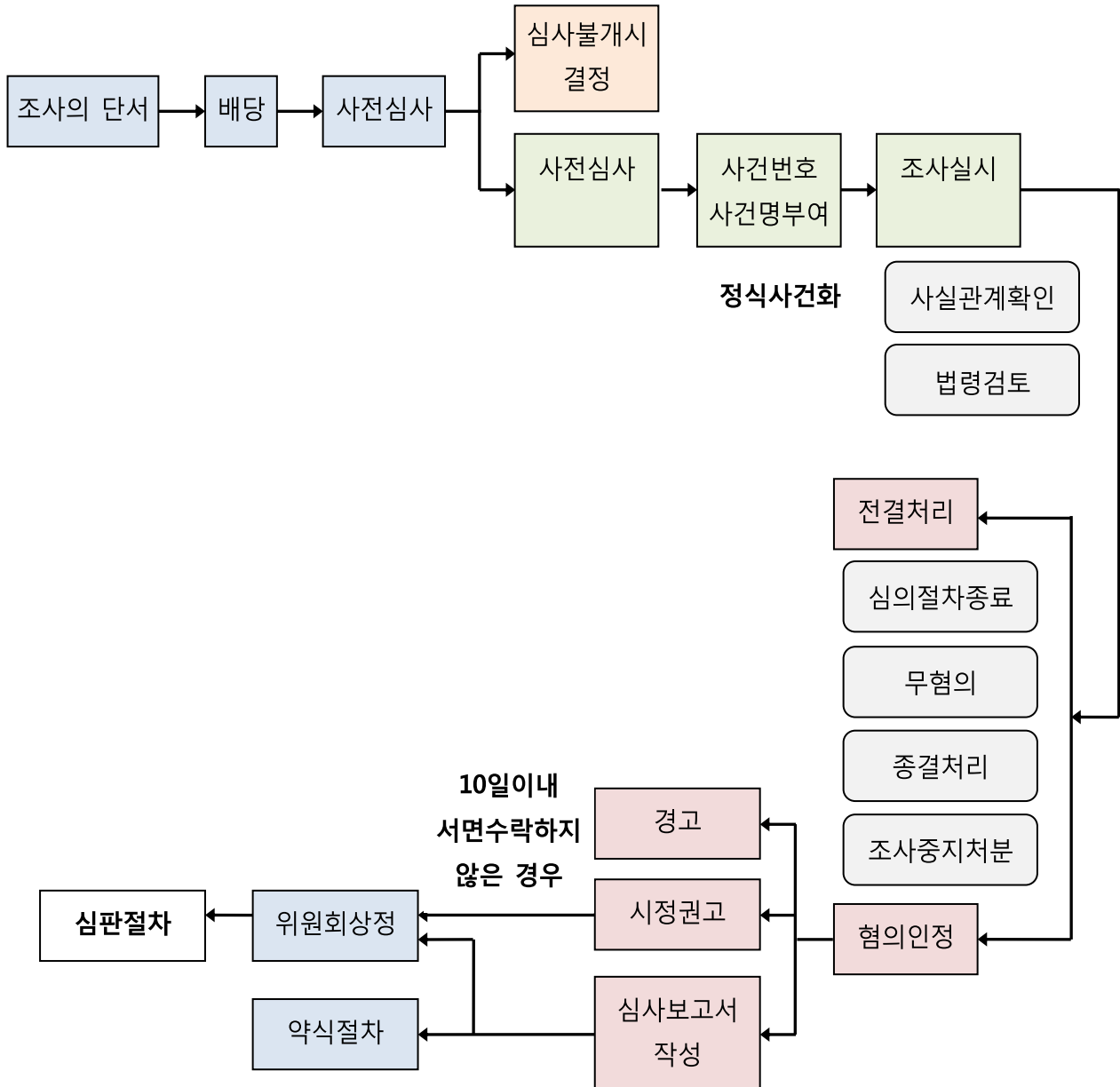


IV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IV.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공정위 조사절차



1.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5개 국(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 조사국/소비자정책국/기업거래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1.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1.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 배당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하며,
-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 을 내리며
-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됩니다.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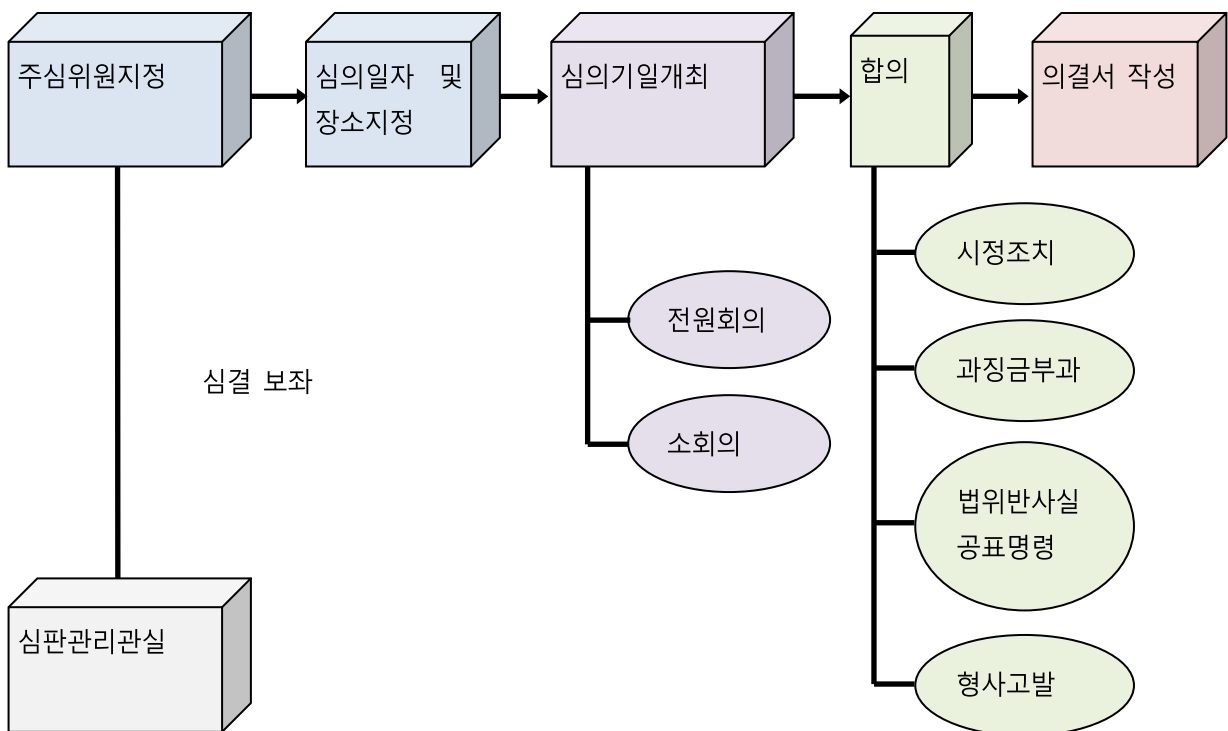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 약식절차 회부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

- 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 일본의 심판 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 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조치의견"을 뺀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됩니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심판절차



2.1 심판 주체

-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하며,
-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

-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하며,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합니다.

2.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으며, 전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합니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 심판/소비자 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합니다.

2.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5일 전까지 통지하며,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됩니다(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2.4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헌바43) 이후 ‘공정거래법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되었으며,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됩니다.

2.5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M a n u a l B o o k



체크리스트

V. 체크리스트

- 목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방법 : 해당 사업부내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한 자율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점검요령 : 자율준수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위반사항에 대해 그 위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자율준수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1. 공정거래분야 Check List

● 일반부당지원행위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및상품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가?(매개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경우 : 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②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금지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안전지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부당공동행위(담합)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공정거래법 19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공정거래법 19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 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 	공정거래법 19조 1항

	<p>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과 의약품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p>공정거래법 19조 1항</p>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간의 상품·용역거래 금액이 분기별 50억 이상이거나 자금, 부동산, 유가증권거래 금액이 연 50억이상 예정된 건이 있는가? (기공시 건 제외) 	<p>공정거래법 제11조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팀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50억 이상 거래에 대해 법무팀, 기획관리팀 또는 공정거래 담당 팀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의 납품이 영향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p>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제공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가?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 	<p>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p>

	<p>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었는가 ?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 변경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지?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지? 	<p>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p>

2. 하도급 분야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관련 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위탁, 발주 후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한 적이 있는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당사(내부)보고 필요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있는가?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등 사실이 있음에도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지급 이후, 대금지급 전 관계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의 기준, 방법,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한 적이 있는가?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한 적이 있는가?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처리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처리한 적이 있는가?"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입고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입고한 날로 기준하여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처리를 한 적이 있는가?" 대금지급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을 계열회사에 비하여 장기간으로 한 적이 있는가?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사에게 합의없이 부담시킨 적이 있는가?" 당사의 관세환급 유무와 관계없이, 협력사에 15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대금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 한 적이 있는가?"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6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토록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건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게 하도급자재 구입을 지정하는 등 협력사에서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수령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PO에 기재된 Lead Time),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p>하도급법 제8조</p>

	<p>발주나간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한 적이 있는가? ●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통보한 적이 있는가?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반품한 적이 있는가? 	
● 부당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한 적이 있는가? ●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한 적이 있는가? ●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한 적이 있는가?" ●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0조</p>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한 적이 있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LTA 등)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적이 있는가? ●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 한후, 제조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한 적이 있는가?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한 적이 있는가?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한 적이 있는가?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적이 있는가?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적이 있는 	<p>하도급법 제11조</p>

	<p>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유지약정 및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2조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대금부당결제청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가?"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 않은 적이 있는가? 계열사(보통 '모트롤')와 비계열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는가?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는가? 단가인하 합의 후, 기발주 삭제 후, 재발주를 한 적이 있는가? 구매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입찰로 선정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입찰로 계약체결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 고지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업체 선정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할 물품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Local L/C(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계약서 없이 발주먼저(선발주 후 계약서교부)한 적이 있는가? 계약서 및 발주서없이 물품제조 및 입고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미치는 발주를 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물 수령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 킬 경우, 1:1로 교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과 다른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한 적이 있는가?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나가기 전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생산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한 적이 있는가?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한 적이 있는가? 생산기술 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 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한 적이 있는가?"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18조, 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한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종료 및 거래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3개월, 120일)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p>하도급법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linace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관련 이슈시, 법무팀 또는 기획관리팀, 공정거래 담당팀의 사전 협의 또는 사전문의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